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 신청 의제 〉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942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 신청 의제	2
가. 개정안의 내용	2
나. 검토의견	4
다. 관계 기관 의견	9

I. 개요

1.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8942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5. 13.

(3) 회 부 일 : 2026. 5. 14.

나. 제안이유

기초연금에 대하여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래할 경우 별도의 신청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기초연금 신청 편의를 제고하고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래할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도입(안 제10조제4항 신설)
- 2) 기초연금을 간주신청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장애인연금 수급 시 신청 및 조사를 위해 제출 또는 제공한 인적·소득·재산 등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1조제6항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 신청 의제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이하 “장애인연금”이라 한다)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하는 날에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을 한 것으로 의제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제출·제공받은 자료나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0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경우, 그 사람이 65세에 도달하는 날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장애인연금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는 제2항에 따른 동의로 본다.
④ (생략) 제11조(조사·질문 등) ① ~ ⑤ (생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1조(조사·질문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신설>	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및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다. 1. 「장애인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지급 신청을 위하여 제출한 자료 및 정보 2.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 및 실시 등을 위하여 조사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 3. 그 밖에 장애인연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자료 및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및 정보
⑥ (생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65세에 도달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연금이 지급됨.¹⁾

- 참고로, 2026년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하여 각각 월 소득인정액 기준 224만원과 140만원으로 정하여져 있음.²⁾

□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2종으로 구성되는데,³⁾ 이 중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기초급여’의 금액은 「기초연금법」

1) 「장애인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매년 필요한 재원(財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에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2)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제2조(2026년도 선정기준액)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4조에 의한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400,000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240,000원으로 한다.

3) 「장애인연금법」

제5조(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 이 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補填)하여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2. 부가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제9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⁴⁾

- 참고로, 2026년 기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⁵⁾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⁶⁾은 각각 349,700만원임.

□ 그런데, 「장애인연금법」에서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⁷⁾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가 되어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되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고,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을 별도로 신청하여야만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는 실정임.

□ 개별 수급권자의 관점에서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같아 그 실질이 사실상 동일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65세에 이른 중증장애인으로 하여금 기초연금의 지급을 별도로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편의에 따르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바,

4) 「장애인연금법」

제6조(기초급여액) ① 기초급여의 금액(이하 “기초급여액”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다만,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초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기준연금액을 고시한 경우 그 기준연금액을 기초급여액으로 한다.

5)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2026년도 기준연금액) 법 제5조에 의한 2026년 기준연금액은 34만9천7백원으로 한다.

6)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제3조(2026년도 기초급여액) 「장애인연금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2026년도 기초급여액은 349,700원으로 한다.

7) 「장애인연금법」

제6조(기초급여액) ⑤ 수급권자 중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는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 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의제하려는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의 기초연금 수급권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타당한 취지인 것으로 생각됨.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에 장애인연금 급여액 변경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기초연금 별도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유·무선으로 안내하고는 있으나,⁸⁾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고령의 중증장애인에게 기초연금 지급 신청을 별도로 요구하는 것이 장애인연금·기초연금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현행법 제10조제1항⁹⁾에 따른 ‘신청주의’의 예외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현행 「기초연금법」은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사를 한 후 그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을 결정하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¹⁰⁾

8) (서식 36호) 장애인연금 급여액 변경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장애인연금 수급자로서 매월 장애인연금(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을 받으셨으나, 65세에 도래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되는 ()년 ()월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부가급여만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인연금법」 제6조제5항에 따라 65세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통해 소득지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은 별도로 신청을 하여야만 지급 가능하므로, 65세가 되기 전 기초연금을 꼭 신청하여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장소 및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9) 「기초연금법」

제10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①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기초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에 한하여는 ‘신청주의’를 적용하는 대신 65세에 도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신청을 의제하는 예외를 두려는 것이므로,

안 제10조제4항 전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원칙(신청주의)과 예외의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수급희망자가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65세에 도달하는 날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현행법 제5조제7항제2호나목¹¹⁾에서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를 지칭할 때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3호¹²⁾’가 아닌 ‘「장애인연금법」 제4조¹³⁾’를 인용하고 있음.

10) 「기초연금법」

제13조(기초연금 지급의 결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조사를 한 후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결정한다.

11) 「기초연금법」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⑦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

2. 제4항 각 호 또는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

12) 「장애인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수급권자”란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13) 「장애인연금법」

제4조(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에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

□ 둘째, 「장애인연금법」에서는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9조제6항 및 제25조제2항),¹⁴⁾

안 제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연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나 정보를 「장애인연금법」 제9조

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험직무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3. 「별정우체국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 ④ 선정기준액의 기준, 고시 시기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장애인연금법」

제9조(신청에 따른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신청을 받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2.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가구 특성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사항
3.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지급계좌 등 장애인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장애 상태와 장애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장애 정도를 재심사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제2항에 따른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희망자·수급권자, 그 배우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하 “수급권자등”이라 한다)에게 소득·재산 및 장애 정도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국세·지방세, 토지·주택·건축물·자동차·선박·항공기,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무원연금·공무원재해보상급여·별정우체국연금·기초연금, 출입국,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의 입소·출소, 매장·화장·장례,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 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와 제23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벌칙) ② 제9조제6항(제10조의2제5항 및 제1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12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 수급권 발생·변경·상실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집·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래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신청 편의를 제고하고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에 동의함.

문 의 처

02)6788-5506
